



서울특별시 중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**도시관리계획(복창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경미한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 처리**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263호(2005.09.01)로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-238호(2012.09.0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312호(2014.09.04)로 변경결정 고시된 우리구 복창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5년 제1차 중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15.02.23)를 통해 지구단위계획(경미한 사항)을 변경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과 지형도면을 고시코자 합니다.

가. 구 역 명 : 복창 지구단위계획 구역

나. 변경내용 :

○ 도시기반시설(지하도로)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■ 지하도로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 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(㎡)			폭원 (m)	연장 (m)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		
변경	1-1	도로	지하 도로	남대문로4가 남대문시장 앞	4,063.9 (232)	감)103	3,960.9 (129)	21.2	147	1979.12.26 (서고 제528호)	•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해당 면적 - 획지61 : 129㎡

※ ()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

※ 지하도로 면적은 구적면적이며 추후 측량 등을 통하여 결정

■ 입체적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입체적 결정 규모			비 고	
				구분	높이(m)	면적(㎡)		
폐지	도로	지하 도로	남대문로4가 남대문시장 앞 (남대문로4가 71-3 일대)	지상1층	34.5~41.0 (해발고도)	33.0	지하상가로 출입하는 시설 연결통로	최초결정일(2012.9.6.) (서고 제2012-238호)
				지하1층	27.3~34.5 (해발고도)	103.0		

첨부 : 도시관리계획(복창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경미한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문 1부. 끝.

